세인관세법인 SEIN Newsletter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문의사항
박민영관세사 T/ 02-6011-3033 메일/ mypark@esein.co.kr

2016.02.06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 및 개정사항 안내

1. 전안법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안법'을 '16.1.27일 공포하고, '17.1.28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17.1.26일에는 '전안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공포되었으며, 마찬가지로 '17.1.28일부터 시행 중임

2. 주요 내용

① 안전관리 용어 및 관리방식 일원화(적용대상 확대X)

- 기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사실상 동일한 안전관리 제도였으나 명칭이 상이하였던 바, 금번 개정을 통해 양 제도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을 일원화
- 상기와 같이 명칭이 일원화되지만,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안전관리 적용대상품목이 확대되는 것은 아님

② 시험인증기관 관련 제도 보완

- 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전기용품의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
- 시험인증기관이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 업계의 제품 출시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증신청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문의사항
박민영관세사 T/ 02-6011-3033 메일/ mypark@esein.co.kr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16.02.06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 및 개정사항 안내

2. 주요 내용

③ 소비자 보호규정 강화

- 안전확인 전기용품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개정 이전에는 안전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판매 등을 위해서는 시험과 신고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므로 위해한 제품의 시중 유통 방지에 기여

④ 인터넷 판매제품의 인증정보 게시의무 부여

- 인증정보 : KS인증마크, 인증번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은 미해당), 제품명, 모델명(있는 경우),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법 시행 초기에 인증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17.12.31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여도 판매가능토록 규정
-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 개정법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제품설명서 및 시험결과서를 보관토록 규정하였으나, 법 시행 초기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12.31일까지는 시험결과서 보관의무가 없으며, 제품설명서만 보유하면 되도록 유예기간 부여

⑤ 소상공인 및 소비자등 반발에 따른 향후 조치

-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상공인 및 소비자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매대행업자 등이 제품 수입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의사항
박민영관세사 T/ 02-6011-3033 메일/ mypark@esein.co.kr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16.02.06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 및 개정사항 안내

3. (참고) 전안법 개정이후 안전관리 체계

□ 품공법과 전안법의 통합이후 안전관리 체계

구 분	기 존		개 정
법 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관리대상	안전인증 (가스라이터 등 11종)	안전인증 (전선 등 39종)	안전인증 (가스라이터, 전선 등 50종)
	자율안전확인 (자전거 등 32종)	안전확인 (TV 등 63종)	안전확인 (자전거, TV 등 95종)
	안전·품질표시 (가정용 섬유제품 등 41종)	공급자적합성확인 (스캐너 등 71종)	공급자적합성확인 (가정용 섬유제품, 스캐너 등 112종)

* '전안법 시행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6년 3월 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3(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정민화 과장 (043-870-5440), 안광희 연구관(5441)
생활제품안전과 윤기환 과장 (043-870-5450), 이경희 연구관(5451)

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공포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고 2017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 통합법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하여 1년 후 시행

** 법률 용어 중 기존 **공산품의 용어는 생활용품으로 변경**하여 범위를 명확히 함

○ 그 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으나,

-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고**

-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어

-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법령을 통합하게 됨

□ 이번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통합과 함께 안전한 제품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련 제도를 일부 보완**하였음

○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함

* 인증을 받은 후 저가 부품으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리콜제도 등 사후관리가 한층 체계화되어 사전 인증부담은 일부 경감하게 됨

○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인증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규정함

- 인터넷을 통한 제품 구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인증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미인증 제품을 구매할 우려가 커져 인증정보 게시가 필요함**

* 온라인 쇼핑몰 거래 금액 : '13년 : 38.5조원, '14년 : 45.3조원, '15년 : 53.9조원(출처 : 통계청)

□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 양재동 The-K호텔에서 업계 관련자 약 350여명이 참석하는 설명회(3.3(목), 15:00~17:00)를 개최하여 **개정된 내용을 알리는 한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업계의견을 수렴하였음**

○ 설명회에서 일부 제조업체는 공장검사 주기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안전규제를 더욱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산업부는 **국민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검토할 방침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정민화 과장(☎ 043-870-5440), 안광희 연구관(☎ 043-870-5441), 생활제품안전과 윤기환 과장(☎ 043-870-5450), 이경희 연구관(☎ 043-870-5451)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3-03 14:58:11

참고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요**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용품·공산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후에 적용하는 제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영 중

· 제품출시 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1974.1.4. 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1967.3.30. 제정)」

· 제품출시 후 :「제품안전기본법(2010.2.4. 제정)」

○ **(시장출시 前)** 안전관리 대상 품목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인증을 통해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

* 제품별 위해수준에 따라 3단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로 안전관리

안전인증(50종, 22%) | **안전확인**(94종, 40%) | **공급자적합성확인**(116종, 40%)

높음 ◀ (소비자의 위해도) ▶

구 분	대상품목(260) (전기용품/공산품)	적 용 절 차
① 안전인증	50종(39/11)	제품시험 + 공장심사 ⇨ 인증 ⇨ 판매 (KC마크)
② 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94종(61/33)	제품시험 ⇨ 신고 ⇨ 판매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품질표시)	116종(73/43)	제품시험 ⇨ 판매 (KC마크)

○ **(시장출시 後)**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 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리콜(권고 또는 명령) 및 고발 조치

<제품안전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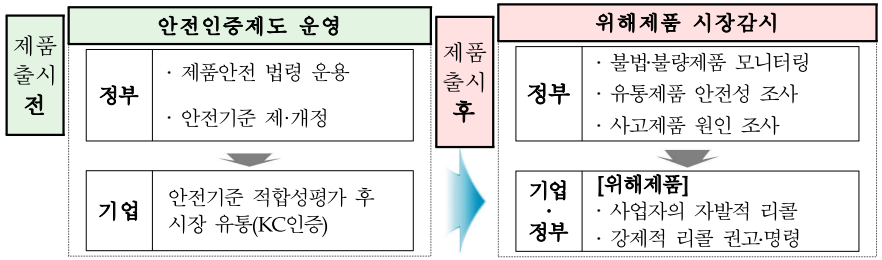

보 도 설 명 자 료
('17. 1. 24)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 "전안법' 강행 ('17.1.24, 헤럴드 경제 인터넷기사 등)

1. 기사내용

□ 전안법 시행(1.28일)으로 인해 ①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②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 안전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③해외직구 등에 있어 KC인증 부담 확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은 그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위해 '16.1.27일 공포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7.1.28일 시행될 예정임

①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적용되어 부담 확대 여부

- 과거 생활용품에 대해 적용되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상에서도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자체 내지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토록 되어 있었으며, 이는 전안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함

- 다만, 정부는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임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②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 상기 의무는 소비자로 하여금 인터넷상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신설된 사항임

- 다만, 동 사항도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8.1.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③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대행업자의 KC마크 표시여부 확인

- 국표원은 최근 제기된 상기 조항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왔으며,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하여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예정임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문의 : 산업통[illegible]국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정민화 과장 (043-870-54440)
김선근 사무관 (043-870-5445)
생활제품안전과
배진석 과장 (043-870-5454)
이경희 연구관 (043-870-5451)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참 고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1. 26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담당과장	정민화 과 장(043-870-5440) 배진석 과장대리(043-870-5454)	담 당 자	김선근 사무관(043-870-5445) 이경희 연구관(043-870-5451)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시행 1.28일)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1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됨에 따라 동법이 2017년 1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힘

○ 그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가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던 바, 양 제도를 통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번에 시행됨

* '16.1.27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하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공포('17.1.26)

□ 금번에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확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함

- 기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을 바탕으로 해당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던 동일한 제도였으나 명칭이 상이하였던 바, 금번 개정을 통해 양 제도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을 일원화

- 상기와 같이 명칭이 일원화되나, 기존의 안전·품질표시제도와 새로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간에 시험확인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시험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음 (별첨 1 자료 참고)

* 기존에 안전·품질표시제품이 총 4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이 총 71종이였던 바, 법 개정 이후 통합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총 112종임

- 전기용품의 경우 기존 법에서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정기검사 주기가 생활용품과 동일하게 '2년 1회'로 규정됨

②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 관련 제도를 보완하였음

-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인증기관의 신규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인증기관간 경쟁을 확대하고 기업이 신청한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기대

* 기존에 안전인증대상제품 11개 분류 중 1/2 이상에 대해 시험능력이 있어야 인증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나, 법 개정 이후에는 1/3 이상만 시험능력이 있어도 인증기관으로 지정 가능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시험·인증기관이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업무가 정지될 때 시험·인증 업무가 중단되어 업계의 제품 출시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1일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증 등을 신청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③ 안전확인 신고제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에 주력

-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확인 전기용품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개정 이전에는 안전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판매 등을 위해서는 시험과 신고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바, 위해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법 개정 이전에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취소가 가능하였으나, 안전확인 제품은 신고에 대해 효력을 상실토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음

- 인터넷 판매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인터넷상 게시해야 할 인증정보*를 규정함

* 인증정보 : 인증마크, 인증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은 해당 안됨),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국한),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다만, 법 시행 초기에 인증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17.12.31일까지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가능하도록 규정

-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 개정법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관련서류*를 보관토록 규정하였으나, 법 시행 초기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12.31일까지는 시험결과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제품설명서만 보유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

* 관련서류 : 제품설명서(제품설명서가 없을 경우 제품 기본정보로 대체 가능), 시험결과서

□ 향후, 국표원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2개 사항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자(소상공인)부담이 완화되도록

○ 업계·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매대행업자 등이 제품 수입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기용품관련) 정민화 과장 (☎ 043-870-5440)
김선근사무관 (☎ 043-870-5445)
생활제품안전과(생활용품관련) 배진석 과장대리(☎ 043-870-5454)
이경희연구관 (☎ 043-870-5451)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별 첨]

□ 품공법과 전안법의 통합이후 안전관리 체계

구 분	기 존		개 정
법 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관리대상	안전인증 (가스라이터 등 11종)	안전인증 (전선 등 39종)	안전인증 (가스라이터, 전선 등 50종)
	자율안전확인 (자전거 등 32종)	안전확인 (TV 등 63종)	안전확인 (자전거, TV 등 95종)
	안전·품질표시 (가정용 섬유제품 등 41종)	공급자적합성확인 (스캐너 등 71종)	공급자적합성확인 (가정용 섬유제품, 스캐너 등 112종)

□ 개정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의 상세 설명

구 분	기 존		
법 령 (제 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안전품질표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공급자적합성확인)	기용품 및 생활 품 안 (확인)
대 상	의류 등 생활용품 41종	스캐너 등 전기용품 71종	스캐너 등 전기용품 71종 의류 등 생활용품 41종
시험실시여부 (안전기준 적합)	○	○	○

○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섬유제품 등 안전품질표시대상 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이 변경되나 시험여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음

○ 또한, 법 개정이후에도 의류 등 섬유제품에 있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원단이 시험결과서를 기획득한 경우 그 원단을 사용한 최종 의류제품에 대해 별도 시험이 불필요하며, 동일 원단으로 여러 모델을 제조한 경우에도 추가적 시험은 불필요함